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이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24
----------	--------

발의년월일 : 2020. 8 . .

발 의 자 : 이민석, 강명숙, 권영숙,
김기석, 김성희, 김영미,
김진천, 서종수, 정혜경,
최은하

1. 제안이유

최근 저출산·고령화, 비혼 인구 증가 등에 따라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1인가구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1인가구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나. 1인가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안 제5조)
- 다. 실태조사 실시(안 제6조)
- 라. 지원사업 및 지원시설 설치·운영(안 제7조~안 제8조)
- 마. 사무의 위탁(안 제9조)

3. 관계법령

「건강가정기본법」

4. 예산조치 : 해당없음

5.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20. 8. 28. ~ 2020. 9. 1.

나.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2.“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 3.“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 4.“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1인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 및 식생활 지원 사업

3.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4.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커뮤니티 지원 사업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지원 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 사

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 시설 설치·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제6조 실태조사
- 나. 제7조 지원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김려진
연 락 처	02-3153-8932